

# 4단계 BK21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내규

2021.03.01. 제정  
2021.06.01. 일부개정  
2022.01.01. 일부개정  
2022.06.01. 일부개정  
2022.09.01. 일부개정  
2023.03.01. 일부개정

<4단계 BK21 중일어문학교육연구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4단계 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함)의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근거

본 내규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BK21 운영 시행 세칙」,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본교의 여러 규정, 그리고 교육연구단의 4단계 BK21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한다.

### 제3조 적용

본 내규의 내용은 4단계 BK21 중일어문학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중일어문학과 교수,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대학원생,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 제4조 교육연구단 구성

- ① 본 교육연구단은 본교 중일어문학과 교수,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및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 ② 본 교육연구단은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연구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교육연구단장 산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본 교육연구단 BK21 사업의 모든 계획과 집행 및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시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및 참여교수 4인, 총 6인으로 구성한다.

## 제3장 참여대학원생 지원 및 선발

## 제6조 참여대학원생의 정의

-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 전원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 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대학원생 지원)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 제1절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 제7조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대상자

- ① 지원원칙  
제10조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② 지원기간  
과제수행기간인 2020. 09. 01 ~ 2027. 08.31 까지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 ③ 지원규모  
<별표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결정 하에 학기 내에도 연구장학금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고,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4단계 BK21 연구장학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체 장학금지급 내규에 준수하여 지급한다.

### 제8조 참여대학원생 대상 제외자

1. 상근직장 근무자(4대보험가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 여부를 통하여 철저히 확인)
2.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3. 연구장학금을 받고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제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
4. 해당 학기 휴학자
5. 소정기한 동안 연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9조 참여대학원생 기타 조건

- ① 참여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주당 6학점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교육연구단장 승인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③ 내국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교육연구단 내에서 연구성과가 탁월하거나, 연구 과제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연구실 학술 활동 등 구체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 경우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 ④ 박사수료생(8학기 등록 이내)의 경우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 ⑤ 학점 미이수로 인한 5학기 이상의 추가등록 박사과정생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교환 학생,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

- ① 석사과정생
  1. 연구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
  2.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3. 교육연구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생
  4. 다만, 신입생의 경우 연구계획서 및 독서계획서를 참고하여 선발
- ②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1. 국내외 학술지에 1회 이상 투고한 대학원생을 우선으로 함.
  2.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 대학원생을 우선으로 함.

3.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4. 다만, 신입생의 경우 연구계획서 및 독서계획서를 참고하여 선발

####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 ① 참여대학원생은 기한 내 각종 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가 종료된 본 학과 대학원생은 취업 시 즉시 교육연구단에 보고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종료 이후에도 교육연구단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제12조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참여대학원생 지원 신청서류, 연구결과물 및 기타 제출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01. 01.>

### 제2절 지원대학원생 연구결과물 제출

#### 제13조 제출대상

본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대학원생

#### 제14조 연구결과물

- ① 박사과정생의 경우 국제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연구결과물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석사과정생의 경우 논문형식의 연구결과물과 전공 관련 학술저서 독서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다.
- ③ 박사과정생의 연구결과물에 한하여 해당 학기 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확인과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06. 01>

#### 제15조 제출자료

- ① 교육연구단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자료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다.
- ② 모든 연구결과물은 본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 ③ 모든 연구결과물(논문 및 발표 요지문)에는 반드시 학과 및 교육연구단 소속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01.>

국문(예):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 박사수료 / 석사과정,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영문(예): "Ph.D. Student / Ph.D. Candidate / MA Student, Department of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BK21 Four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Korea University."

#### 제16조 연구계획의 변경

- ① 지원대학원생은 기제출한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이에 해당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 연구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

- ① 연구기간 중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 중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이 중지(유보)되며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액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 사유>

1.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관리 내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연구지원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타 연구결과물을 표절하였을 경우
  4. 동일한 논문으로 이중 지원을 받았을 경우
  5. 연구결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6. 취업, 연수, 유학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7. 기타 본 교육연구단 운영에 있어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 ③ 지원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전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출국 및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한다(예: 개인적인 해외 연구자료 조사나 여행 등의 개인 일정을 위한 해외체류). 만약 해외체류를 할 경우 해외 체류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외체류 날짜가 14일을 초과하면(주말 및 공휴일 포함), 교육연구단이 장학금 전액을 해당 학기 종료 전까지 환수한다. 다만, 단기연수 및 해외 학술행사 참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9. 01.>

#### 제18조 연구장학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연구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환수를 통보받은 대학원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지도교수를 통하여 본 교육연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 제19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면제

- ①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에 의해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 자료가 소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실종, 형사소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② 위 제1항 이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장 참여인력 성과급

#### 제20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간접비로 한다.

#### 제21조 지원시기

성과급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급 지급의 편의상 매 학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 대상자 선정

성과급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23조 사용용도

- ①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시 중앙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다만,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하는 성과급의 경우 참여교수의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4조 지원조건

- ①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원조건
  1. 저서 및 논문 등 연구성과가 뛰어난 경우
  2.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 활동 등을 활발히 한 경우

3. 교육연구단 내 학생 교육 및 지도에 모범을 보인 경우  
다만, 대학 보직 및 석박사 배출 인원 항목은 참여교수에 한한다.
4.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한 경우
5.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낸 경우
6.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 지원조건
  1. 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2. 국내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3. 우수한 저서를 간행한 경우
  4. 우수한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5.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우수한 경우
  6. 교육연구단의 활동 참여 및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
- ③ 행정직원
  1. 교육연구단의 활동 참여 및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  
(세부사항은 행정직원 성과급 평가표에 따름)

## 제25조 지원액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의 성과급은 국고지원금과 간접비 지급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한다.

-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1인당 연 최대 480만원으로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1인당 연 최대 400만원으로 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학기당 1인 최대 150만원으로 하며, 성과급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성과급 수혜자는 전체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2. 성과급은 학기별로 연구 업적이 현저히 높은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질적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4. 그 밖에 교육연구단의 연구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대학원생에게 지급될 수 있는 월별 연구장학금과 성과급 등의 총액은 석사 220만원, 박사 280만원, 박사수료 250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연구성과가 탁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행정직원의 성과급은 연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 제26조 지원절차

-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급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해당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② 성과급에 관한 제출 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01. 01.>

# 제5장 장·단기 해외연수 선발 및 지원

## 제27조 선발기준

- ① 장기연수
  1.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인 자
  2. 학업성적과 연구결과물이 우수하여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3. 본 교육연구단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제학술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4. 다만, 지원대학원생은 장기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단기연수

1. 국제학술대회(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4개국 이상,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논문 50% 이상)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2. 국제학술대회(기준 상동)에 참가하여 사회 및 토론을 하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3. 학술협력 교류 행사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4. 다만, 단기연수의 경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수기간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지원범위

### ① 부실학술활동 방지

1.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장·단기해외연수 시 한국연구재단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 본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 <양식4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합 여부를 필히 점검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2. 01. 01.>

### ② 장기연수

1. 장기연수 대학원생이 해외학술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수할 경우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2. 장기연수 대학원생은 지원신청 시 해당 해외학술기관의 연수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단기연수

1.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해당 대학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2. 참여교수가 단독으로 해외학회에 참가 시 출장여비 지원이 불가하다.
3.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 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29조 지원금액

- ① 장기연수의 경우 1인당 6개월 기준 미화 1만 달러 이내로 지급한다.
- ② 단기연수의 경우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와 학술대회 등록비를 지급한다.

## 제30조 제출서류

장·단기 해외연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제출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01. 01.>

## 제31조 연수 종료 후 연수보고서 제출

장·단기 해외연수 종료 후 연수보고에 관한 제출 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01. 01.>

# 제6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 제32조 지원 및 채용기준

### ① 자격

1. 박사후과정생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박사학위 취득 시점 이전에는 채용할 수 없다).
2.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 가.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 나.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다.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② 세부 선발기준

1. 선발 대상자의 연구성과, 학술활동 성과 및 향후 활동계획과 목표를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2. 박사후과정생의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2/3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

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계약교수의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2/3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 ③ 의무

1. 박사후과정생은 본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교수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진연구인력에게는 채용기간 중 본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제4호와 같이 타교 강사의 신분은 이종소속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4. 시간강의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박사후과정생의 경우 학기당 교내·외 총 6학점, 계약교수의 경우 학기당 교내 6학점, 교외 6학점, 총 12학점으로 허용한다.

## 제33조 인건비

- ①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연봉제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및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을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본 교육연구단의 기여도가 현저할 경우, 국고지원금과 간접비 지급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③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한다. 이는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 금액에 해당한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한다.
- ④ 인건비는 신진연구인력 개인명의로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다(세금 공제 후 집행).

## 제34조 학술활동 지원비

- ① 신진연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및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연수의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다만, 일회성 참가비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 제7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 제35조 참여교수 선정

-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훈령 제1조제2항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제36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관리 운영 내규를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신청 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해당 참여교수는 내규 제35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하여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하게 되어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전문가 활용

### 제37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전문가 활용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간접비로 한다.

### 제38조 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는 해당 분야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로 저서 및 논문 등 연구성과가 뛰어나고, 본 교육연구단의 유익한 활동이 가능한 자로 한다.

② 국내·국외 전문가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A급과 B급으로 구분한다.

### 제39조 전문가 활용비 지급

① 전문가 활용비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강연료 지급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2. 자문료 지급 기준은 <별표4>에 따르며, 단기자문료는 장기자문료 일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3. 원고료는 20,000원 이내 (A4용지 1장당)로 지급한다.
4. 번역료는 한국어→외국어-50,000원 이내, 외국어→한국어-30,000원 이내 (A4용지 1장당)로 지급한다.

② 국외 학자 초빙 활용의 경우 상기 전문가 활용비 지출을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E-1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비대면으로 초빙할 경우 예외).

#### 제40조 국내외 학자 여비

- ① 국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실제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다.
- ② 국내외학자에게는 왕복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본교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41조 제출서류

지원 관련 제출 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01. 01.>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제1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41조 개정)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  |      |  |                                |
|-----------|----|--|------|--|--------------------------------|
| 연구자       | 성명 |  | 지도교수 |  |                                |
|           | 학과 |  | 전공   |  | 과정/ 학기수<br>석사과정/박사과정/박사수료/00학기 |
| 연구<br>과제명 |    |  |      |  |                                |

☐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절한 동료심사를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항목                                   | 네 | 아니오 |
|----|--------------------------------------|---|-----|
| 1  |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     |
| 2  |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     |
| 3  | 편집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     |
| 4  |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     |
| 5  |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   |     |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Submit](http://thinkchecksubmit.org) 캠페인(<http://thinkchecksubmit.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절한 동료심사 및 발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항목                           | 네 | 아니오 |
|----|------------------------------|---|-----|
| 1  |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
| 2  |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     |
| 3  |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     |
| 4  |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     |
| 5  |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     |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Attend](https://thinkcheckattend.org) 캠페인(<https://thinkcheckattend.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별표1>

| 구 분    |      | 총 지원액<br><2023.03.01. 개정>      | 교부방법        |
|--------|------|--------------------------------|-------------|
| 지원대학원생 | 박사과정 | <u>9,600,000원</u><br>(월 160만원) | 연구장학금 (비과세) |
|        | 박사수료 | <u>7,800,000원</u><br>(월 130만원) | 연구장학금 (비과세) |
|        | 석사과정 | <u>6,000,000원</u><br>(월 100만원) | 연구장학금 (비과세) |

<별표2>

| 직급<br>구분 | 기준                                                                       |
|----------|--------------------------------------------------------------------------|
| A급       |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br>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br>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br>그와 상응하는 경력 |
| B급       |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br>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br>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br>그와 상응하는 경력     |

<별표3>

| 구분 | 국내전문가 강연료 | 국외전문가 강연료   |
|----|-----------|-------------|
| A급 | 50만원/회 이하 | 1500\$/회 이하 |
| B급 |           | 1000\$/회 이하 |

<별표4>

| 구분 | 장기자문료(일기본급)   | 단기자문료(시간기본급)   |
|----|---------------|----------------|
| A급 | 300,000원/일 이하 | 150,000원/시간 이하 |
| B급 | 250,000원/일 이하 | 100,000원/시간 이하 |